

## 통역

주택재심위원회(Housing Appeals Committee)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통역의 도움이 필요하다면, 전화통역서비스(131 450)로 전화를 해서 통역에게 주택재심위원회(02 9715 7955)와 연결시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. 주택재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월요일-금요일, 오전 8시 30분 - 오후 4시 30분입니다.

주택재심위원회의 심리에 통역이 필요하다면, 주택재심위원회 비서실 직원에게 통고하십시오. 이 심리에는 전문 통역사가 이용되며, 친척이나 친구를 통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## 주택재심위원회란 무엇인가?

- NSW 주 사회복지주택 제공기관 (주택부와 커뮤니티주택 제공기관)이 내린 어떤 결정을 재심리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.
- 주택제공기관은 사건이 주택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되기 전에 최초의 결정에 대한 내부적인 (1차적 수준의) 재심사(internal review)를 완료해야 합니다.
- 주택재심위원회로의 재심 청구는 내부적인 재심사가 있는 이후 3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.
- 주택재심위원회는 주택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며, 주택부로부터 별도로 재정지원을 받습니다.

## 누가 주택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?

- NSW 주 사회복지주택 신청자 - 다시 말해서, 주택부 또는 장기 커뮤니티주택 또는 서비스 신청자
- NSW 주 주택부 또는 장기 커뮤니티 주택 세입자

주택공급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그것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.

## 무엇에 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?

- 복지주택 신청자의 경우 - 대부분의 쟁점은 대기순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, 대기순서상의 우선 순위, 그리고 기타 주택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.
- 세입자의 경우 - 대부분의 쟁점은 이전 신청, 신체장애자를 위한 주택 개조, 세입자의 계승, 집세의 계산 등과 관련된 것입니다. 쟁점이 주택임대차법(Residential Tenancies Legislation) 하의 사안이라면 소비자 · 상인 · 주택임대차재판소(CTTT) (이전의 주택재판소)가 쟁점을 다룰 것입니다.

## 재심 신청은 어떻게 하나?

주택공급기관의 내부적 재심사(internal review)에 의한 결정이 난 후 삼(3)개월 이내에 귀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.

- 주택공급기관이 제공한 재심 신청 양식을 작성하십시오. 또는
- 주택재심위원회 비서실에 전화하여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십시오. 또는
- 주택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십시오.

### **주택재심위원회 심리(hearing)에서는 무엇을 하나?**

위원회는 2, 3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재심을 신청한 사람 (appellant 라고 부름)은 회의 전화를 이용한 인터뷰 또는 직접 본인이 출석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위원회에 말을 할 수 있습니다. 위원회는 주택공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철을 가지고 있으며, 재심신청인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. 위원회는 재심신청인에게 주택공급기관의 결정이 왜 불만스러운지 그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. 이 인터뷰는 약식으로 진행되며 약 30~40 분이 소요됩니다.

### **심리가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?**

인터뷰가 끝난 후 위원회는 정책, 서류상의 증거, 그리고 인터뷰 중에 제기된 쟁점들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. 위원회는 그들이 내린 결정과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써서 재심신청인과 주택공급기관 양쪽에 보낼 것입니다. 이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심리가 끝난 후 2 주 이내에 보냅니다.

### **심리에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 있나?**

네, 원한다면 도와 줄 사람이나 대변자를 한 사람 데려올 수 있습니다.

### **대변자가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나?**

네,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귀하께서 대변자가 그렇게 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 그러나 대변자가 귀하를 위해서 말할 수 있더라도, 가능하다면 위원회가 재심신청인인 귀하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함으로써 위원회는 모든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. 이 심리는 법률에 의거한 재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변호사가 대변자로 나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.